



# 보도자료

2020. 11. 23.(월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##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◆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(연 2회 이상)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,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
- ◆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(5년 단위)
- ◆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(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), 교육시설통합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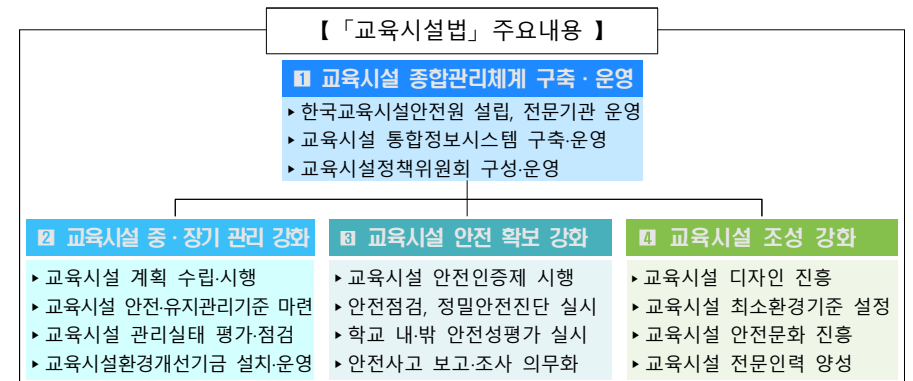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 24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행령 제정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교육시설법」) 제정(2019.12.3.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.

○ 시행령은 12월 4일(금)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,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「교육시설법 시행규칙」 제정안도 함께 공포·시행할 예정이다.

□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,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·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·점검이 어려웠다.

- 또한 경주·포항 지진,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·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,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.
- 이에 현 정부에서는 「교육시설법」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,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(시행: 공포 1년 후)되어,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


□ 「교육시설법 시행령」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【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】

-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·관리가 강화된다.
  - 그간 교육시설은 「시설물 안전법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.4%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  -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(반기 1회)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결함 발견 시 보수·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‘교육시설 안전인증제’를 새롭게 도입한다.

- 시설안전,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**안전성 확보**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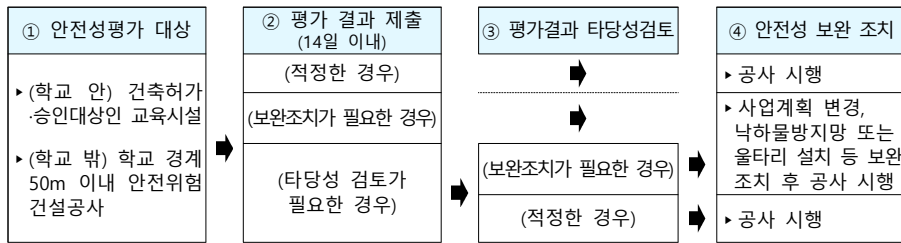
**<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>**

인증 대상	등급	유효기간(주기)	재인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·초·중·고 : 연면적 100㎡ 이상 (학교 단위로 인증)</li> <li>▶ 학생수련원, 도서관 등 : 연면적 1,000㎡ 이상 (수련원 등 단위로 인증)</li> <li>▶ 대학 등 : 연면적 3,000㎡ 이상 (건물 단위로 인증)</li> </ul>	2개 등급 (최우수, 우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우수 등급 : 10년</li> <li>▶ 우수 등급 : 5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㎡ 이상으로 개축·증축 등을 하는 경우</li> </ul>

-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, **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(안전성 평가)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**하여야 한다.

- 이는 **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**함으로써,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.

**< 안전성평가 대상 및 실시 절차 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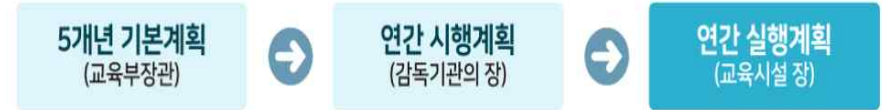
- 아울러 환기·조명 등의 설비 설치,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**최소한의 환경 기준**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.

**【종합적·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·지원 체계 확립】**

-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·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**교육시설**

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
**< 수립 주체별 계획 내용 >**



-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·관리하기 위하여 **‘한국교육시설안전원’을 설립**(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·개편)하고, 시도교육청 단위로 **‘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’을 설치·운영**한다.

-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**‘교육시설통합정보망’**을 구축하여,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.

-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·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“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·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, **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“보다 **튼튼한 교육시설 안전망**을 구축하여,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**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**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【붙임】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

